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4

제출년월일 : '99. 6.  
제출자 :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증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심의결과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

### 2. 주요골자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에 대하여
  - 지정신청 또는 사전승인 사항을 신고로 완화 (조례 제16조, 조례 제17조)
  - 판매소 영업 취소권한을 축소 (조례 제18조 제4호)
  - 채권확보 규정 폐지로 민원부담을 경감 (조례 제16조 제1항)

###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 행정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항

### 4. 개정조례안 : 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6. 참고사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규제조항을 신속히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코자 함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중 “지정”을 “신고”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하며 구청장은 봉투판매소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중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를 “판매소의 신고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지정을 받은자는”을 “신고를 한자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괄호내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삭제하며, 같은조 제3항중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는”을 “판매소를 신고한 자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중 “지정”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본문중 “지정을”를 “신고수리 사항을”로 하며, 같은조 제4호중 “지정을 받은자가 타장소에 위치를 변경한 때”를 “신고를 한자가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단서 조항 “단, 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는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6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 (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봉투판매소 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p> <p>제17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판매자는 구청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li> <li>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li> </ol>	<p>제16조(판매소의 신고) ①</p> <p>---</p> <p>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영업장소의 이전, 세변경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p> <p>(2) ---</p> <p>---</p> <p>-- 판매소의 신고사항을 주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7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p> <p>-- 신고를 한 자는</p> <p>(2) (현행과 같음)</p> <p>1. --- (식 ④)</p> <p>2. (현행과 같음)</p>

위 행	개정(안)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는 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할 시 신액 환불 하여야 한다.	(3) 판매소를 신고 한 자는 ----- ----- -----
제18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배부하지 아니한 자 2. 13. 6.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가 타점소에 위치를 변경한 때 5. 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지 아니한다. 6. 봉투판매 내용을 구청장이 정한 기한까지 넘겨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관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8조(판매소의 신고사항 취소) ----- 신고수리 사항을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 신고를 한자가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조항 삭제)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84)

###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9. 7. 12.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99. 7. 15.
- 라. 위원회 심사 : '99. 7. 24.

###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중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중 불필요한 규제로 인하여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심의결과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지정할 시 지정신청 또는 사전승인 사항을 신고로 완화(조례 제16조, 조례 제17조)
- 판매소 영업 취소권한을 축소(조례 제18조 제4호)
- 채권 확보 규정 폐지로 민원부담을 경감(조례 제 16조 제1항)

#### 다. 근거법규

-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2항

### 4. 검토보고 요지

- 개정 조례안 제16조 2항의 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정 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 소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규정에서 아니할 수 있다는 민원의 편리보다는 구청장의 재량행위가 강하므로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 수정가결 내용

수정전	수정후
<p>제16조(판매소의 신고)</p> <p>② 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소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6조(판매소의 신고)</p> <p>② 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판매소의 신고사항을 수리하지 않는다.</p>